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98 |
|----------|-----|

제출연월일 : 2007. 8. 24.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및 불의 사용에 있어 지켜야 할 세부관리기준을 정하여 화재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원안의결 / 규제 신설 2건
 - (2) 입법예고 : 2007. 7. 20. ~ 8. 9.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등)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별표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 책임자는 작업자 중 1인 이상을 안전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팩스를 포함한다)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아파트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2.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3.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지하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4.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제4조(과태료)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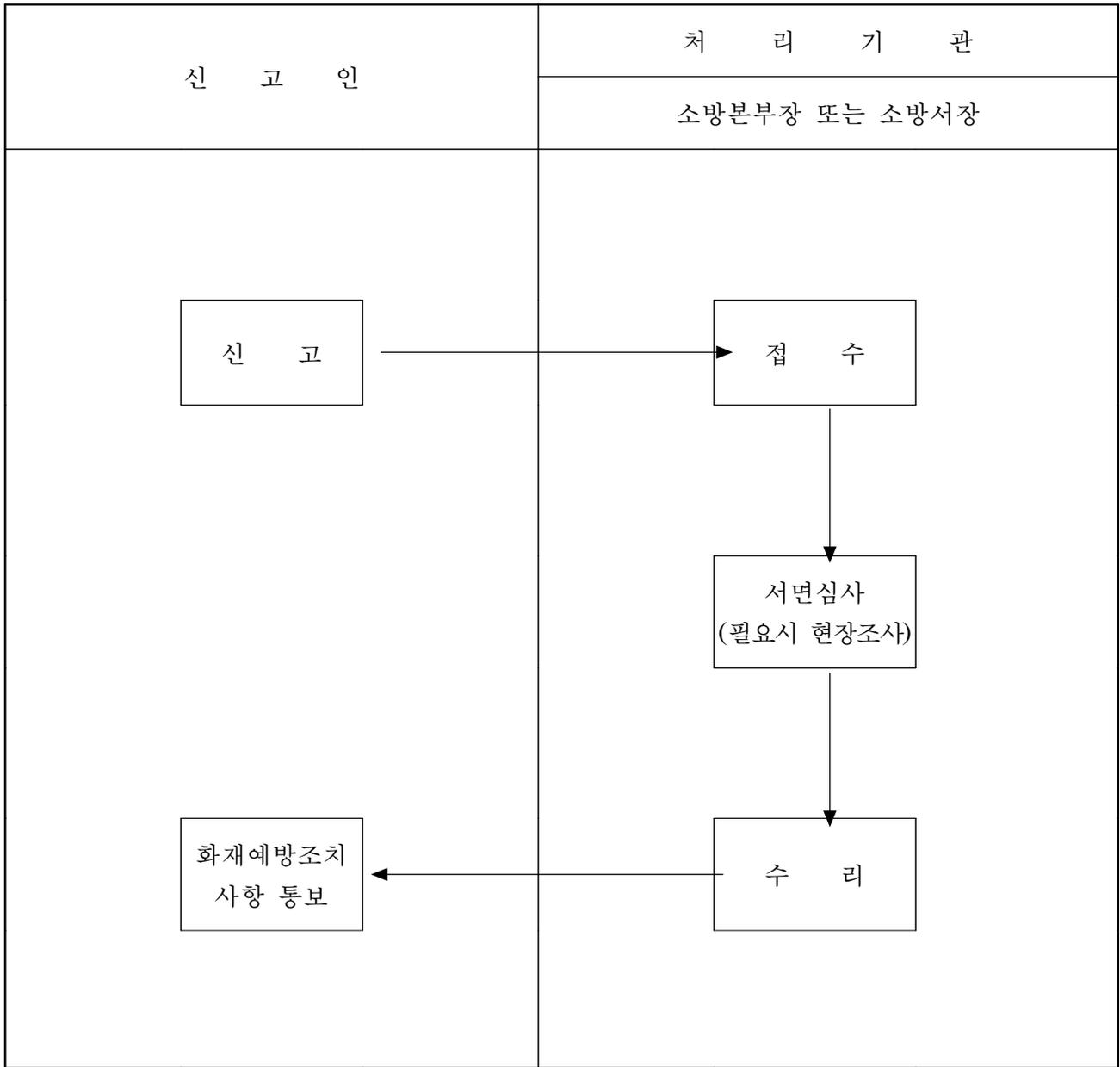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제2조제1항 관련)

| 종 류 | 세 부 관 리 기 준 |
|--------------------------|---|
| 가스나 전기 등에 의한 용접 또는 절단 설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장에서의 전기·가스시설 및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할 것 2. 작업실시 전 및 작업종료 후 용접작업용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용접불티가 닿는 부분의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를 할 것 4. 작업장 주위에 수동식소화기 2대 이상과 물·마른모래 등의 소화용구를 작업장 규모에 따라 적정 비치할 것 5.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의 분진제거장치 및 환기시설의 적정상태를 유지할 것 6.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7. 그 밖에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것 |
| 불티가 생기거나 높은 열이 발생하는 설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만든 실내에 설치하고 주위의 가연물을 제거할 것 2.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3.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
| 불꽃놀이기구 (장난감용은 제외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꽃놀이 기구 및 물품은 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 것 2. 불꽃놀이 기구 및 물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연성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불꽃, 불티 또는 고온체와 접근을 피할 것 |

| | | |
|---|--|------------|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서 | | 처리기간 |
| | | 즉 시 |
| 예 정 일 시 | | |
| 장 소 | | |
| 행 위 구 분 | | |
| 내 용 | | |
| 목 적 | | |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
| ※ 접 수 | | ※ 경 유 |
| | | |
|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자주소 : | | 전화번호 : |
| 성 명 : | | (서명 또는 날인) |
| 대전광역시 ○○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 귀하 | | |
| 비 고 | | |
|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 | |
| 2. 그 밖의 필요한 사항란은 소화설비의 개요,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 | |
| 3. 전화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접수자가 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 | |
|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 | |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57조(과태료) 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야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